

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중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2. 30.

##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제240호

### 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3(의원면직 제한) 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4(퇴직금의 제한) 이사장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시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의3(의원면직 제한) 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는 「<u>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u>」을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58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u>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u></p>	<p>제27조의3(의원면직 제한) ----- -----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p> <p>제27조의4(퇴직금의 제한) 이사장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 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 /2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p> <p>제58조(징계의 효력) ① ----- -----, ----- ----- 출 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u>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